

첨 부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회사(업체)명			성명	대표이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연락망	(전화) (이메일)	
	본사주소	(-)		설립일자	'00.00.00	
	공장주소	(-)		전화 :		
				팩스 :		
	업종		주생산품		표준산업 분류코드	
매출액		종업원수		기술유출 피해경험	유/무	
참여이력	<input type="checkbox"/> 기술보호 현장자문 ('00.0.0) <input type="checkbox"/> 기술보호 정책보험 ('00.0.0) <input type="checkbox"/> 법무지원단 ('0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지킴서비스 ('0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유출방지시스템 ('00.0.0) <input type="checkbox"/> 기술자료 임치 (일반/고도화, '00.0.0)		
담당자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전화 :	휴대폰 :	E-mail :		
가입경로	<input type="checkbox"/> 온·오프라인 설명회/교육/상담 <input type="checkbox"/> 추천기관/기업(기관·기업명 :)			<input type="checkbox"/> 언론·인터넷 검색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유무	<input type="checkbox"/> 혁신형기업(이노·메인·벤처) <input type="checkbox"/>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사) <input type="checkbox"/> 그린뉴딜 유망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소부장 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업)		
첨부서류	1-1.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1부. 1-2.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 1-3. 최근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1부. 1-4.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내)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1-6.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첨부1-1】 선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서

보유 핵심기술

기술보호 활동 현황

(예시) 핵심기술 사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기술보호 전문가의 보안진단과 반기별 직원 교육, 핵심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000장비 구입·활용 등)

- 정부/기관/지자체의 기술보호지원사업 참여이력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참여년도

기술보호 관련 애로사항/문제점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 기술탈취 및 유출피해경험(최근 5년 이내)

추진방향과 목표

<희망하는 개별 지원사업>

희망여부 (여/부)	사업명	활용목적 및 내용
	기술보호현장자문	- 분야 : - 내용 :
	법무지원단	- 분야 : - 내용 :
	기술자료임치	- 임치건수 :
	기술보호 정책보험	- 보험물 :
	기술지킴서비스	- 희망서비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분야 : 일반/ 고도화 - 구축내용 :

※ 개별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연계사업 지원 시 중복성 검증을 통해 지원

[첨부1-2]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따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수집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 및 정책 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 제공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등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자료 포함 ▫ 개인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파기 *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대상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수행기관 등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공목적 : 사전컨설팅, 수준확인 심사, 전담제 운영, 지원사업 연계 및 행사·설명회 안내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 접수불가 및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활용 동의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3.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서 조회·활용
 4.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귀사(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고

우대가점 제출서류

□ 우대가점 제출서류(최대 10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일 반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1점	피해사실 입증공문 또는 기타 입증가능 서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정부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8호에 따르는 환경산업체 및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따르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점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기업	1점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에 따르는 혁신기업	1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인증서
	「방위사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르는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	1점	방산업체 지정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에 따라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을 확인받은 기업	1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르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5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5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법」 제2조의2 1항의 2호의 가목에 따르는 벤처인증기업	5점	벤처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5점	창업기업 확인서 등